

의안 번호	1407	[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 일자 : 2017. 11. 10.(금)
- 나. 제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11. 16.(목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12. 6.(수)

#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문을 정비하고, 사업기반 성숙 및 안정화 등으로 감면 목적이 달성된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문 정비(안 제3조)
  - 1) 감면 적용기한 삭제
  - 2)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추가 경감을 신설
- 나.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(안 제5조)

### 4. 근거법규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55조

#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문을 정비하고, 울산항만공사가 2007년 설립된 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,
- 2007년 설립 당시 도입된 재산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(2017. 12. 31.)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